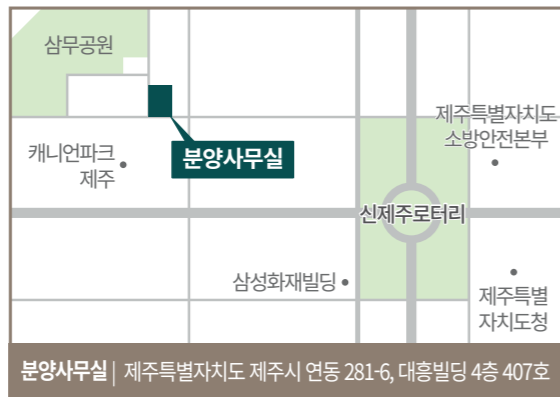


유의사항

- (1) 공통 사항
- 1.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 및 준공도서가 우선함.
- 2.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환산법 :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3.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상호정산 하기로 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4.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5.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장례식장, 냄새유발시설 등), 사업부지 주변 개발, 개발계획을 관련 행정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본 사업부지의 주변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약취, 해충, 농약살포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차단시설은 없습니다.
- 7.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점 예정일 2024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통보 예정 입니다.)

※ 실 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점일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

1단지 160세대 | 84m²~168m²

- 현장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 위
- 시행(위탁) : (주)예도개발 · 신탁(수탁) : 코리아신탁(주)
- 시공 : (주)대우건설

문의 064) **749-0508**

※ 본 홍보물의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UGIO

The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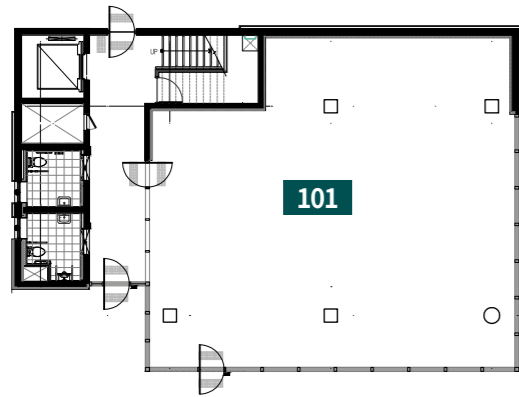
분양안내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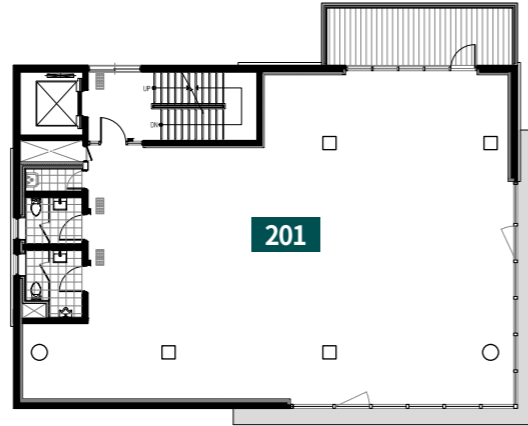
PRUGIO

■ 근린생활시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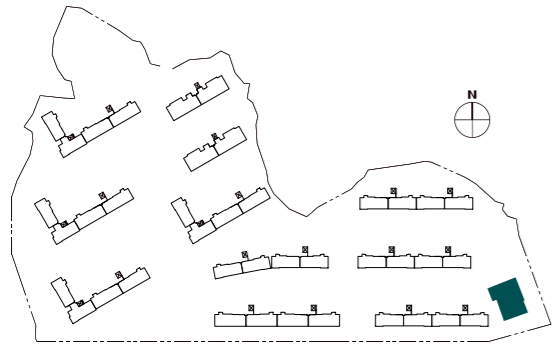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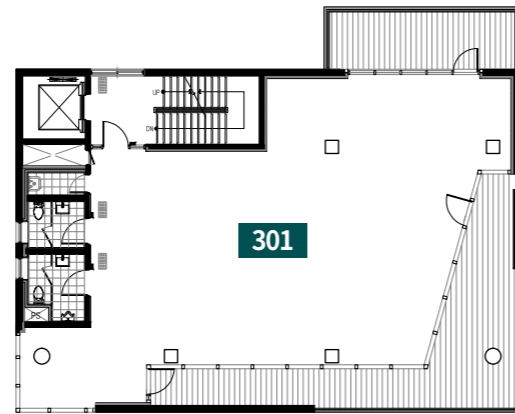
1F



2F



3F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린생활시설 분양안내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34 외
- 공급면적 근린생활시설 총 646.1900㎡
- 공급규모 근린생활시설 지상 1~3층, 총 3개호실
- 공급대상

구분	호수	분양면적			대지지분	공급가			내정가 (최저입찰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근린	101호	166.1300	56.2500	222.3800	298.8230	466,422,233	1,392,343,425	139,234,342	1,998,000,000
생활	201호	202.2800	32.9600	235.2400	363.8471	246,517,457	735,893,221	73,589,322	1,056,000,000
시설	301호	155.6100	32.9600	188.5700	279.9004	197,494,099	589,550,819	58,955,082	846,000,000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및 실제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登記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상기 대지면적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면적을 실행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또는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최저입찰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호수표기는 입찰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용도 근린생활시설

구분	사용용도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인 것) 다. 이음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등 주민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 (바닥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것) 다.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라. 체력단련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 금융업소, 출판사 등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사.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동물병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단,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 생활시설은 제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 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점포별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하여야 함.
 ※ 상기 이용시설기준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건축법시행령[별표1]참조)이며, 항목별 이용 가능 용도 및 허가면적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 안내

■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	잔금
금액	공급가의 10%	공급가의 90%
납부시기	계약시	입주시(2024. 02월 예정)
납부계좌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 수협은행 1010-2189-9034	

※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대출은 없으며, 계약자가 자력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과 무통장 입금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치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를 생략하오니 상기 납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는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이나 타 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 계약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점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참조)
 ※ 입점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점개시일 이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키포출 및 점포이용(인테리어공사, 물건 적치 등)이 가능합니다.
 ※ 본건 근린생활시설은 계약금 10% 납부 후 전매 가능, 일괄 양도조건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매발생 시 납부일 기준 계약자 명의로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합니다. (예시: 계약일 이후 전매 발생 시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중도금 및 잔금은 각 납부일 기준 승계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전매발생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은 발행하지 않습니다.(양수, 양도자간의 결정사항임)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시	• 계약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추후 자필기재)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법인 계약시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 주민등록증 / 직원 계약 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상기 본인 계약서류 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도장